

#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68호  
개정 2006·3·10 조례 제 605호  
일부개정 2015·8·10 조례 제1127호  
일부개정 2020·6·30 조례 제160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·6·30]

**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** ①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·3·10, 2020·6·30>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
3. 기타 참고서류

**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**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 채무에 대해서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② 시장은 제1항의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채무보증서의 교부)**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담보설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·6·30>

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

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

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(별지 제4호서식)를 교부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**제5조(보증채무의 변경)**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·6·30>

**제6조** 삭제 <2020·6·30>

**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**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·3·10 조례 제6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5·8·10 조례 제11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6·30 조례 제16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# 채 무 보 증 신 청 서

제 호

이 천 시 장 귀하

주 채무자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(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)

2. 내 용

가. 채 권 자

나. 채 무 액

다. 이 자 율           년

라. 상환기간       부터       까지       년간

마. 상환계획

3. 사 유

가. 주 채무발생

나.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

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

라. 기타 참고사항

4. 준 수 사 항

가.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,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마.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·8·10>

채무보증승인통지서(제3조제2항 관련)

제 호

귀하

이 천 시 장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상환함에 있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 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주채무자
- 2. 채무건명
- 3. 채 무 액
- 4. 이 자 율           년
- 5. 상환기간       부터       까지       년간
- 6. 상환재원
- 7. 담    보
- 8. 용자재원
- 9. 관계기관
- 10. 채무보증근거
- 11. 기        타
- 12. 준 수 사 항

- 가.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.
- 나.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,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라.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마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- 바.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

이 천 시 장 귀하

채권자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           년
5. 상환기간        자       지        년간
6. 상환재원
7. 담    보
8. 용자재원
9. 기    타
10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시가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·재산·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·8·10>

채 무 보 증 서(제4조제3항 관련)

제 호

채권자 귀하 이 천 시 장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           년
5. 상환기간       부터       까지       년간(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)
6. 상환재원
7. 담    보
8. 용자재원
9. 관계기관
10. 채무보증근거
11. 기        타
12. 준 수 사 항

가.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보 증 채 무 현 황 표

주 채무자	용도	보 증 채무액	대출 누계	금기말 채무액	금기중		금기말 채무액	금기말 연채액	금기중 이 자 발생액	금기중 이 자 상환액	금기말 수 자 미 이
					대출	회수					